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7. 23 선고 2020가단5117667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

피고1. B

2. C 유한회사

변론 종결2020. 7. 16.

판결 선고2020. 7. 23.

주 문

1. 피고 B는 원고에게 61,471,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11. 8.부터 2017. 12. 7.까지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2018. 2. 5.까지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2018. 6. 30.까지 연 11.2%의, 그 다음날부터 2020. 7. 9.까지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가. 피고 B는 피고 C 유한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
나. 피고 C 유한회사는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 근거

가. 피고 B에 대한 청구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나. 피고 C 유한회사에 대한 청구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윤양지

별지